B형간염 예방접종

B형간염과 이를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B형간염 예방접종의 효과 및 접종 방법에 대한 안내문입니다.

1. B형간염이란?

-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 또는 만성으로 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.
- 신생아기에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바이러스를 평생 동안 몸에 지니고 있는 만성 B형간염 보유자가 됩니다.
- 소아 및 성인기에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식욕부진, 피곤, 설사와 구토, 황달과 같은 급성간염의 증상이 나타났다 회복되지만 5~10%에서는 만성 B형간염 보유자가 됩니다.
- 만성 B형간염 보유자의 4명 중 1명은 나이가 들면서 만성 간염, 간경변, 간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2. B형간염 바이러스의 전파경로

-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됩니다.
  -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피부 및 점막을 통한 감염
    (예: 수혈, 오염된 주사기 사용, 혈액투석, 침습적 검사나 시술 등)
  - B형간염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주산기 감염
  - 성 접촉

※ B형간염은 일상적인 활동(재채기, 기침, 껴안기, 음식 나눠먹기, 모유수유 등)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.

3. B형간염 치료

- 급성 B형간염의 치료는 증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가 대부분이며, 만성 B형간염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제한적입니다.

4. B형간염 예방법은?

- B형간염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●접종대상 : 모든 영·유아
●권장 접종시기 : 생후 0, 1, 6개월에 3회 기초접종

5. B형간염 예방접종 후 항체검사의 필요성

- 건강한 소아나 성인의 경우 예방접종 후 항체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다음 고위험군의 경우는 3회의 예방접종 완료 후 항체검사를 실시합니다.
  -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
  -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하는 환자
  -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
  - HIV 감염인 등 면역저하자
  - 의료기관 종사자(B형간염 환자나 바이러스가 오염된 체액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)
  -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의 성 접촉자
  -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

6. 추가접종의 필요성

- B형간염 3차 예방접종 후 1~3개월에 항체가가 최고로 나타나며,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항체가가 감소하지만 기억면역이 유지되므로 건강한 소아나 성인의 경우 예방접종 후 일률적인 항체검사나 이에 따른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.

7. B형간염 예방접종의 안전성

- 다른 의약품들과 마찬가지로 B형간염 백신도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매우 드물며, 임신이나 수유 및 면역억제 상태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입니다.

8. B형간염 예방접종 시 주의할 사항은?

- 건강한 상태에서 B형간염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며,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.
-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.
  - 백신 구성 성분이나 이전에 B형간염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
-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합니다.

※ 경한 호흡기 감염과 설사 등과 같이 가벼운 질환은 금기사항이 아닙니다.

9.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

- 접종 후 20~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합니다.
-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.
- 접종부위는 청결히 합니다.
-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,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

10. B형간염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?

-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이상반응은 매우 드뭅니다.
- 흔한 이상반응
  - 접종부위의 통증, 권태, 발적, 압통, 부종, 발열 등

11. B형간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?

-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.
- 이때 의사에게 이상반응 증상, 증상이 발현한 시간 및 예방접종 시간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- 또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(http://nip.cdc.go.kr)의 「이상반응 신고하기」를 통해 신고합니다.

12.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

-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『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』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,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(http://nip.cdc.go.kr)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접종기관명:

연락처: